2019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건강보험료]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권태호	860927-*****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내역

(단위:원)

월별	보수월액(고지금액)		소득월액(납부금액)		
결글	건강보험료①	장기요양보험료②	건강보험료③	장기요양보험료④	
01월	141,230	12,010	0	0	
02월	141,230	12,010	0	0	
03월	141,230	12,010	0	0	
04월	144,180	12,260	0	0	
05월	144,180	12,260	0	0	
06월	144,180	12,260	0	0	
07월	144,180	12,260	0	0	
08월	144,180	12,260	0	0	
09월	144,180	12,260	0	0	
10월	144,180	12,260	0	0	
11월	144,180	12,260	0	0	
12월	144,180	12,260	0	0	
연말정산	52,020	3,840			
합계	1,773,330	150,210	0	0	
총합계				1,923,540	

1. 보수월액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1-

2.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국민연금보험료]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권태호	860927-*****

■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단위:원)

월별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
01월	194,040	0
02월	194,040	0
03월	194,040	0
04월	194,040	0
05월	194,040	0
06월	194,040	0
07월	198,090	0
08월	198,090	0
09월	198,090	0
10월	198,090	0
11월	198,090	0
12월	198,090	0
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	0	
추납보	0	
실업크레딧 납부금액		0
합계	2,352,780	0
	총합계	2,352,780

- 1.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2.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은 12월에 납부 총액 표기)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권태호	860927-*****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번	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무)KB닥터플러스건강보험				
보장성	202-81-48***		20175004631		860927-*****	권태호	345,288
	흥국생명보험 (주)		(무)흥국생명드림건강보험1801(
보장성	104-81-18	3***	2197305200004		860927-*****	권태호	1,200,000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		무배당 미리받는 변액종신보험				
보장성	120-81-32	2***	0012330289		860927-*****	권태호	1,878,240
	우정사업본부		올커버암치료 올커버암치료				
보장성	101-83-02***		09959125060		860927-*****	권태호	151,200
	디비손해보험 :	주식회사	프로미카개인용				
보장성	201-81-4	5***	220193720991000		860927-*****	권태호	426,28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권태호	860927-*****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별합계금액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4,001,008

1.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권태호	860927-*****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7-91-88*	부*****	일반	80,900
7-90-48*	현*****	일반	88,100
7-90-95*	석*****	일반	54,200
7-08-21*	신****	일반	667,380
7-92-11*	동*****	일반	31,000
7-90-70*	서*****	일반	9,200
7-16-07*	메***	일반	19,900
5-18-00*	뉴****	일반	7,450
3-92-00*	\$ *****	일반	133,300
1-09-61*	편***	일반	8,500
6-98-00*	에********	일반	512,900
0-32-00*	O *****	일반	4,700
0-20-00*	행***	일반	3,000
4-38-63*	부*****	일반	62,4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권태호	860927-*****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1,682,93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1,682,93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6-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권태호	860927-*****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089,561	0	135,800	110,700	20,336,061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120-81-54***	롯데카드 주식회사	일반	54,000
신용카드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5,277,221
신용카드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중교통	10,400
신용카드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도서공연등	81,000
신용카드	213-86-15***	현대카드주식회사	일반	14,758,040
신용카드	213-86-15***	현대카드주식회사	대중교통	125,400
신용카드	213-86-15***	현대카드주식회사	도서공연등	29,700
신용카드	101-86-61***	(주) KB국민카드	일반	300
인별합	계금액			20,336,061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가수하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들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박규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권태호	860927-*****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8,022,894	0	0	574,936	8,597,83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214-81-37***	비씨카드 (주)	일반	19,600
직불카드 등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7,998,794
직불카드 등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도서공연등	574,936
직불카드 등	101-86-61***	(주) KB국민카드	일반	4,500
인별합계금액				8,597,830

- 1. 공제대상: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권태호	860927-*****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1,910,413	0	0	0	1,910,413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74		01월	02월	03월	04월	고테디사그애
구분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25,500	84,900	536,100	175,000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180,400	107,900	20,900	137,098	1,910,413
		121,400	103,015	346,200	72,00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일련번호: 20200122-27970852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9-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차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권태호	860927-*****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대출종류 (상품명)	최초차입일 최종상환예정 일	상환 기간	주택 취득일	저당권 설정일	연간합계액 속	연간합계액 소득공제 대상액	소득공제
(사업사인모)	(영급명)	차입금	고정금리 차입금	비거치식 상환차입금	당해년 원금상환액		내장책	
한국주택금융공사 (104-81-86***)	해당없음 (내집마련 디딤돌	2016-12-29 2026-12-29	10년	2016-12-28	2016-12-29	732,737	732,737	
(104-01-00****)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50,000,000	50,000,000	50,000,000	4,761,235	,	,	
한국주택금융공사 (104-81-86***)	해당없음 (U-보금자리론)	2016-12-29 2026-12-29	10년	2017-01-09	2016-12-29	173,297	173,297	
(104-01-80^^^)	(U-보급사디논)	9,000,000	9,000,000	9,000,000	843,835	-, -	-, -	

- 1. 공제 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3.12.31. 이전은 3억원 이하, 2014.1.1.~2018.12.31. 4억원)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도시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 주택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본인 명의 차입금이 공제대상임
- 2.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차입연도, 상환기간 및 상환종류 등에 따라 연 300만원,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 한도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기본내역 [연금저축]

(조회기간 : 2019년 0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권태호	860927-****

■ 연금저축 납입내역 (단위:원)

상호	사업자번호	당해연도 납입금액	당해연도 납입액 중 인출금액	스타이그애
계좌번호		납입금액	인출금액	순납입금액
삼성생명보험 (주)	104-81-26***	3 600 000	0	3,600,000
00003544392010007		3,600,000	0	3,000,000
순납입금액 합계		3,600,000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

-11-

- 1. 연금저축(2001.1.1. 이후 가입):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간 불입액 공제
- 2. 세액공제 대상금액 : 납입액(전환 신청 금액 포함)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
- 3. 공제 한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함)
- 4.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연간 납입액을 제출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기부금]

(조회기간 : 2019년 01~12월)

■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권태호	860927-*****

■ 기부금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603-82-07337	(사)한국백혈병소 아암협회부산지회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10,000	10,000	0
인별합계금액					10,000

- ※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
- 1. 공제 대상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